

常識을 벗어난 不當한 吸收 統合(案)

韓國包裝開發研究院을 附設研究所化 表明

韓國包裝協會의 包裝團體 統合計劃(案)

**(사) 한국포장협회, (사) 한국포장개발연구원 통합 계획(안)
전 문 (全文)**

〈 작성기관 : 한국포장협회 〉

1. 통합 배경

- 60년대 우리 정부는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62-1966)의 성공으로 수출 물량의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으로 추구하고자 한다는 명제가 강조되고, 이에 따라 수출 상품의 고급화가 대두되어, 디자인과 포장의 필요성이 부각
- 제 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67-1971) 기간 중 구체적인 계획의 일환으로 당시 디자인·포장 관련 3개단체 <(사)한국포장기술협회, (사)한국수출디자인센터, (재)한국수출포장센터를 통합하여 1970년 5월 19일 (재)한국디자인포장센터(KIDP,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전신)를 설립
- 70년대 초 황무지나 다름없었던 우리나라 디자인·포장 분야는 한국디자인포장센터의 설립으로 연구·진흥사업을 통하여 국내 디자인·포장분야의 획기적인 발전을 주도하고, 정부정책 대행기관으로서 성공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 80년대 들어 한국디자인포장센터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급변하는 시대적 조류에 적응치 못하고, 기관명칭만을 3-4회 변경(한국디자인포장센터 → 한국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하였을 뿐, 경직된 조직, 사업 등이 민간 기업 및 단체에 각종 기능을 잠식당하고, 90년대 들어서는 진흥사업만을 주도하여 명맥을 유지
- 그나마 1996년 12월 30일 설립 근거인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이 “산업디자인진흥법”으로 개정되어 산업디자인진흥원의 포장관련 업무를 수행할 법적인 명분이 사실상 상실됨.
- 1997년 정부(산업자원부)는 포장관련 업무를 이관할 단체를 모색중, 30여개 관련 조합 및 단체 중 (사)한국포장협회가 그 대상단체로 인정된 바 있음.
- 이후,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이 주도하고 제지공업협동조합, 지합공업협동조합, 종이킵조합 등 제지계통의 단체가 산업자원부(당시 통상산업부)에 강력 항의하여 협회의 이관업무가 백지화 됨.
- 1997년 10월 30일 “(사)한국포장개발연구원”의 설립을 산업자원부가 승인, “포장기술지도”사업을 우선 이관(’98.6)하고 점차 포장진흥·연구 업무를 이관할 시점에서 신정부의 유사단체 통폐합 정책을 들어 협회가 강력 반발
- 1998년 12월 30일 까지 양 기관이 통폐합하는 조건으로 ’98년도 일부사업을 연구원이 수행하는 것을 협회가 양해(98.8 협회장 참석)
- 같은 분야를 두고 여러개의 유사단체가 활동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고비용 저효율의 일례로서, 현재 신정부에서도 각 분야마다 강력한 통폐합 정책을 펴고 있고, 포장산업 분야도 어떤 경우든 1개 단체로 통폐합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사항임.

2. 통합 추진방향

가. 통합에 따른 일반적인 사례

- 1개 기관이 해산 또는 소멸하여 다른기관에 흡수
- 1개 기관이 다른 기관에 사업부서로서 존립(사업부서 확장)

나. 법적인 문제점

- 사단법인은 통합 이전의 명칭을 동시에 사용할 수 없음
- 회계 사항은 반드시 통합하는 1개 기관의 회계에 따라야함

다. 통합추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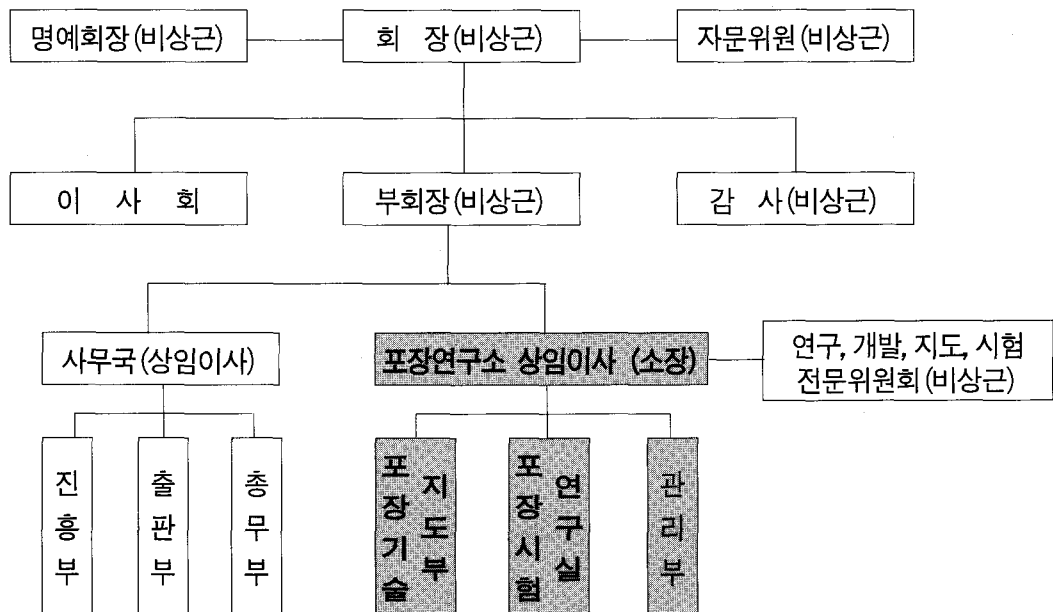
(사)한국포장협회가 (사)한국포장개발연구원을 협회 사업부서로 통합하는 방안이 최선

* (사) 한국포장협회는 1991년 12월에 설립, 사업, 회계, 조직등이 정착(회원사 : 102개)되어, 이미 국내 포장산업 발전을 위한 실적과 함께 타 기관을 흡수할 능력과 수용태세가 완비되어 있고, (사)한국포장개발연구원은 1997년 10월에 설립 승인을 받아, 현재 “포장기술지도”사업만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고 지원이 없을 경우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이 전혀 없는 상황임.

3. 통합방법

가. 통합방법 : (사)한국포장개발연구원을 협회 사업부서(협회 부설 포장연구소)로 통합

나. 통합내용



다. 업무분장

1) 사무국

- 진흥부 : 포장교육, 포장전시, 포장정책 및 제도 제정, 대정부 대행업무(산업기반기금 등), 국제교류

- 출판부 : 월간지, 각종 포장관련 단행본, 통계자료, 기타 정보지 등 발간
- 총무부 : 회원관리(신입, 탈퇴), 회계, 인사, 재산관리, 예산 등 총무에 관한 사항

2) 포장연구소

- 포장기술지도부 : 포장관련 기업체(재료 생산, 포장재 가공, 포장재 사용업체, 포장기계 등)의 포장개발 및 기술지도 지원
- 포장시험연구실 : 포장시험, 포장개발연구, 연구용역(※KIDP에서 포장시험장비 인수)
- 관리부 : 국고지원금 관리 및 정산, 연구소내 각종 행정지원, 예산 및 재산관리, 협회 사무국과의 창구역할

라. 예산 및 회계 사항

1) 예산 편성

- 협회의 예산은 기존의 예산 편성, 집행, 정산 등의 안을 유지
- 연구소의 예산은 대부분 국고인 점을 감안, 연구소 자체에서 익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협회 이사회에서 심의한 후 정부에 협회장이 요청
- 연구소의 예산집행 및 정산내역도 협회 이사회에서 심의한 후 협회장이 산업자원부에 보고

2) 회계사항

- 협회의 회계분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산업기반기금 등 3개 회계로 분리 운영
- 연구소의 회계사항은 따로 정하여 추진(예:특별회계)
- 연구소의 예산내용(인건비 및 모든 예산 집행 및 내역)은 협회 규정에 준함.
- 연구소의 예산, 사업실적, 집행에 따른 모든 사항은 협회와 동일하게 감사를 받는다(기존 협회 감사체제에 준함)

마. 인사

- 협회는 현재의 규정에 따른다.
- 부설연구소는 상근임원이 사업내용, 사업량 예산범위에 따라 적정인원을 기획, 추천하여 협회 회장의 인준을 득한 후 채용, 배치
- 연구소 소장(상임이사)은 협회 이사회에서 선정, 협회 회장이 발령하고 산업자원부에 보고
- 연구소의 일반직에 대한 승급, 승진, 벌칙 등 모든 인사사항은 협회 규정에 준함

바. 부설연구소내 전문위원회 설치

- 연구소는 포장기술지도, 포장시험, 개발연구, 연구용역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다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사계 및 전 포장 관련분야의 전문가들을 위촉,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전문위원회"를 설치 (현재 "연구원"의 이사진 수용차원)
- 동 전문위원회는 비상근,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공적인 업무수행이나 회의시 여비 및 기타 실비를 지급

4. 이사회 인원조정

가. 기존 협회 이사진들은 그대로 유지

나. 부설연구소로 합병됨에 따라 현재의 한국포장개발연구원의 원장(부회장급), 연구소장(상임이사)을 이사로 배정하여 이사회에 참여 수용(현재 포장협회 이사진 18명)

5. “포장개발연구원”과 합병에 따른 협회 기존 정관상의 해당 적용사항

가. 제1장 총칙 제4조 (사업)

- ⑥ 포장교육 연수 및 기술지도 사업
- ⑨ 포장기술의 연구 및 개발사업

나. 제1장 총칙 제2조 (목적)

- 본회는 우리나라 포장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과 회원 상호간의 복리증진 및 상부상조의 정신에 의한 자주적 경제활동 조장,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 ② 특별회원
포장이외의 제조업체 중 포장연구소나 포장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기업과 포장관련 연구소, 학계, 단체 또는 이에 종사하는 개인

라. 제6장 조직 및 분과위원회 제37조 (조직)

- ① 본 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서와 직원을 둔다.
- ② 본 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설연구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6. 통합에 따른 기존정관 개정사항(표시는 신설)

가. 제1장 총칙 제4조(사업) ①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1. 포장산업계의 의견수렴 및 대정부 건의
- 2. 포장산업 진흥을 위한 정보수집, 전파
- 3. 국제 포장단체간 교류사업
- 4. 포장폐기물 처리 및 재생사업
- 5. 회원사의 포장산업기술 제고를 위한 해외연수 및 전시에 관한 사업
- 6. 포장교육 연수 및 기술지도 사업
- 7. 간행물 발간 및 국내외 전시회(국내 전시회)개최
- 8. 회원 상호간의 권익옹호 및 친목도모 사업
- 9. 포장기술의 연구 및 개발사업
- 10. 포장시험실 운영 → 신설
- 11. 기능공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 12. 장학사업 및 각종 포상제도 운영 → 신설
- 13.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및 전 각호의 부대사업

나. 제3장 임원 제12조(임원) ①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 1인
- 2. 부회장 : 1인 이상
- 3. 상근이사 : 1인 → 1인 이상으로 개정
- 4. 이사 : 5인 이상

5. 감사 : 2인 이내

② 상근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다. 제3장 임원 제16조 (임원지위의 승계)

① 임원이 그 소속한 업체나 **단체의** 대표직으로 부터 퇴임하였을 때에는 그 후임으로 대표직에 취임한 자가 이사회 승인을 받아 임원의 지위를 승계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업체인 경우** 회장, 부회장의 지위는 승계할 수 없다.

라.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40조(회계의 종류)

- 본 회 회계는 일반회계, **사업회계**,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7. 협회 규정상의 문제점 및 개정사항

가. 업무분장 규정 제3조 전면 개정

나. 위임전결규정, 위임전결사항 전면개정

다. 인사규정 제4조 (채용권)개정

라. 인사위원회 규정 개정

마. 직제규정 제2장 임원과 고문 개정

바. 직제 규정 제3장 조직 전면 개정

사. 회계규정(회계단위)개정

아. 인장관리규정 개정 등

※ 동 개정사항은 통합이 확정된 후 규정개정위원회를 설치, "협회"와 "연구원"측이 참가하여 실정에 맞게 전면 개정

8. 기타 검토사항

가. 기금 조성문제

인수합병될 경우 "포장연구소"도 국고를 제외한 포장시험, 연구용역 및 기타 사업등으로 수익이 있을 때 우리협회가 정한 규정 "기금조성의 목적"에 의해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 마련

나. 동일 건물, 동일 사무실 사용을 추진

다. 협회 사무국 및 부설연구소의 상임이사에게 경영권한을 가능한 대폭 위임, 책임 경영토록 하고 업무 공조상 이외에 서로 간섭을 배제

라. 통폐합후, 협회와 부설연구소의 업무가 활성화되고 경영기반이 구축될 때 조직을 확대 개편할 것이며, 현재는 실현가능성이 가장 높게 적은 조직(통합내용, 조직표 참조)으로 통폐합을 추진

마. 현재의 "한국포장개발연구원" 상임이사는 통합 후 업무의 연계성 등으로 부설 연구소의 상임이사로 재임명 필요

- ※ 붙임 1. 협회 정관 사본 1부.
- 2. 협회 규정집 1부. 끝.

韓國包裝開發研究院 產資部에 中間報告
包裝團體統合은 總會事項임으로 會議後 提出

일등상품 ⇒ 일류포장 ⇒ 수출증대

社團法人 韓國包裝開發研究院

Korea Institute of Packaging Development&Research

우150-01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3 미주빌딩7/ TEL 02) 3775-0567(대)/ FAX 02) 761-3771 http://www.kpd.re.kr

문서번호 지도98-84호

시행일자 98. 12. 26

수 신 산업자원부 장관

참 조 품질디자인 과장

제 목 포장관련단체의 통합계획(안) 검토의견 제출의뢰와 관련한 중간보고

1. 귀부 품질 55131-345('98. 11. 26)호, 포장관련단체의 통합계획(안) 검토의견 의뢰의 건과 관련입니다.

2. 우리 한국포장개발연구원의 설립취지, 설립목적, 설립절차의 합리성, 설립발기인 및 창립총회 참여 구성회원이 각 포장재별 9개 중소기업협동조합·협회등 단체와 각 포장분야별 5대 포장재 4축업계 그리고 동 포장학계·학회 대표가 총망라 참여 가입되고 있는 점과

3. 또한, 본 한국포장개발연구원은 귀 산업자원부 고시 및 공고로 중소기업에 대한 포장기술개발사업 기획관리평가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총168명의 지도위원 확보등록으로 정부지원 포장기술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집행하고 있음은 물론, 포장 및 포장산업진흥 5개년 계획(안)을 수립하여 포장을 통한 수출증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 포장산업계의 지원지도에 주력하고 있는 포장진흥사업 수행 인적·물적 태세의 완비, 각 포장업계 참여 조직력 등을 갖추고 있는 국면에 있어

4. 한국포장협회가 작성하여 송부하였다는 소위 『포장관련단체의 통합계획(안)』내용의 타당성 및 필요성 여부를 예의 분석 검토하는 일과

5. 사단법인 단체의 합병·해산 또는 중대한 조직의 변경사항은 민법, 산업자원부령인 산업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과 본 한국포장개발연구원의 정관 규정에 의거, 이사회 및 총회결의 내지 방침 심의를 요하는 사항임으로

6. 이와같은 소정절차를 거친후에 동 『포장관련 단체의 통합계획(안)』에 대한 적·부 검토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오니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한국포장개발연구원 원장

韓國包裝協會는 研究機關아닌 軟包裝業種團體

軟包裝業者 9名이 發起 · 軟包裝協議會로 創立

韓國包裝開發研究院, 產資部에 統合見解報告書 提出

연포장업종단체에 불과한 한국포장협회가 업종단체아닌 전 포장산업의 개발연구기관인 한국포장개발연구원을 동 협회 1개 부설연구소로 흡수 통합하는, 상식을 벗어난 포장단체 통합(안)에 대하여 한국포장개발연구원에서 이사회 및 임시 총회결의로 ① 양단체의 이동(異同) ② 포장협회는 연포장단체인 이유와 전포장산업을 대표할 수 없는 사유 ③ 포장단체 통합은 통합의 필요성과 통합 목적이 명백한 경우의 합법적 절차를 들어, 포장협회 통합(안)의 부당성을 적시한 견해 및 대책 보고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동 전문은 다음과 같다.

일등상품 ⇒ 일류포장 ⇒ 수출증대

社團法人 韓國包裝開發研究院

Korea Institute of Packaging Development & Research

우150-01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3 미주빌딩7/ TEL 02) 3775-0567(대)/ FAX 02) 761-3771 <http://www.kpd.re.kr>

문서번호 지도98-84호

시행일자 98. 12. 26

수 신 산업자원부 장관

참 조 품질디자인 과장

제 목 포장단체의 통합문제와 관련한 한국포장개발연구원의 견해와 대책 보고서 제출

1. 귀부 품질 55131-345 ('98. 11. 26)호, 포장관련단체의 통합계획 (안) 검토의견 의뢰 및 본원 지도 98- 호(98. 12. 3) 동건 중간보고서와 관련입니다.

2. 제목건에 대하여 관계포장 단체간에 포장단체 통합 문제에 관한 협의가 수차례 있었으나, 이는 포장단체 통합의 필요성과 합목적성을 전제로한 협의였으며,

3. 금번 귀부로부터 포장관련단체의 통합계획(안) 검토의견 제출의뢰가 공식으로 있었으므로, 사단법인 단체의 합병·해산 또는 중대한 조직의 변경사항은 본원 정관 제28조, 동41조에 의거 총회 결의사항임으로, 98. 12. 24 제7차 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동건을 부의하여 진지한 심의를 거쳐, 별첨과 같이 본원의 공식 견해를 제출하오니

4. 우리나라 포장산업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포장산업단체현황을 예의 통찰하시어, 중소기업 포장업종단체 9개 협동조합·협회가 우리나라 중소기업 역사상 시범케이스로 같은 유의 업종끼리 협업화·연계하여 컨소시엄으로 조직한 본 한국포장개발연구원이 보다 건전발전 할 수 있는 일관된 시책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첨 1. 한국포장개발연구원과 한국포장협회등 포장단체의 통합문제와 관련한 대책 보고서 1부

2. 1991년 7월2일 현 한국포장협회가 한국연포장협의회로 창립총회를 한 언론보도 2매 1부

3. 한국포장개발연구원 설립 연혁 2매 1부 "끝"

한국포장개발연구원 원장

韓國包裝開發研究院과 韓國包裝協會等 包裝團體統合問題와 關聯한 研究院 見解 및 對策報告書

이 對策 報告書는 1998年 12月 24日 開催한 韓國包裝開發研究院 第7次 理事會 및 第5次 臨時總會에서 萬場一致로 議決한 全文입니다.

I. 21世紀 우리나라 包裝産業 振興計劃 基本指標 및 方針

1. 基本指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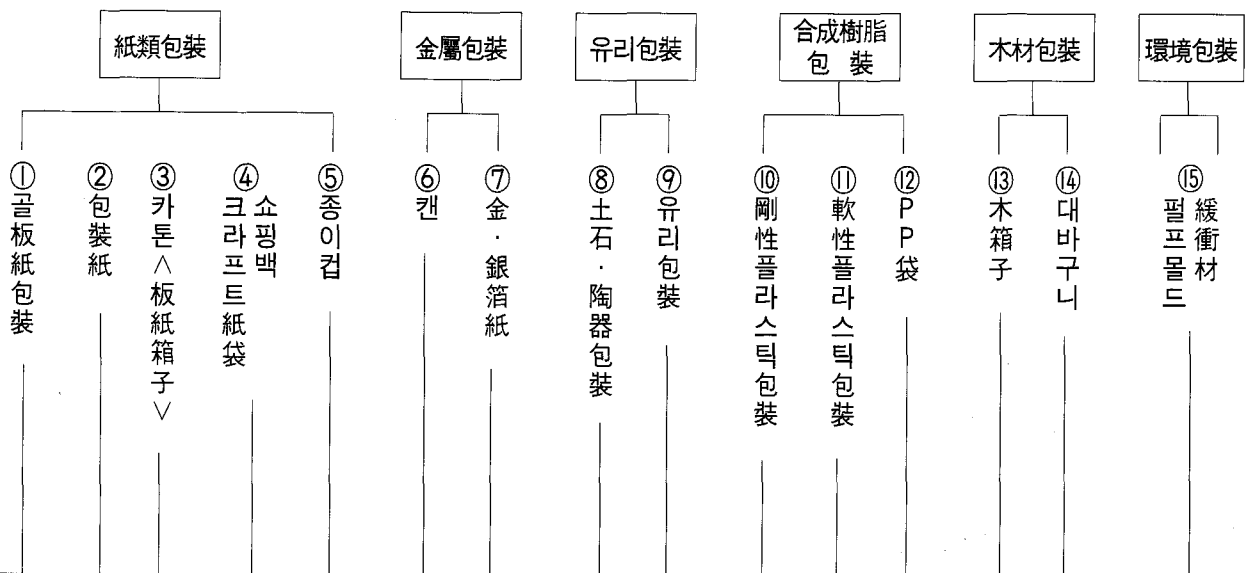
1. 包裝 一流化로 輸出增大
2. 包裝標準化로 物流效率化 및 物流 Cost 低減
3. 包裝合理化로 消費·環境에 寄與

2. 基本方針

1. Korea New 包裝 Image 創出로 第2 輸出立國化
2. 包裝 및 包裝産業 四軸의 均衡 發展
3. 包裝의 新機能·新技術 研究開發
4. 全産業 最高 經營者·Elite 社員의 包裝管理 役軍化
5. 包裝大學 設立·包裝人材 養成

II. 우리나라 包裝産業 業態 現況

1. 開發對象 6大 包裝材別 包裝四軸 60 業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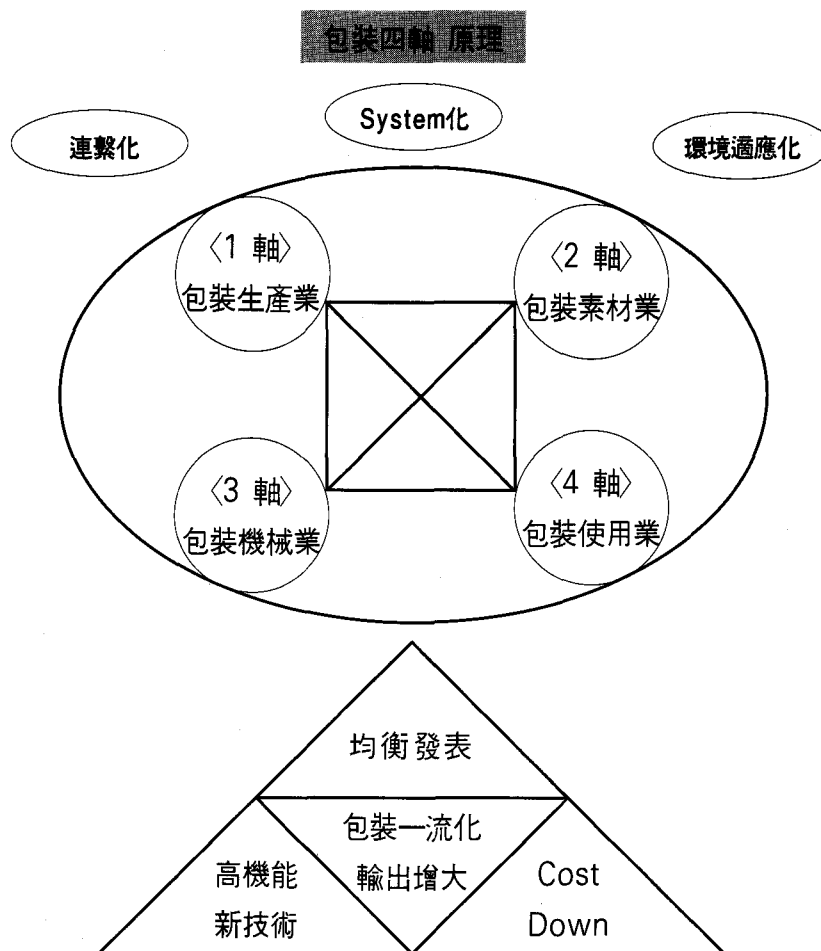


(I) 各 包裝生產業體 (II) 各 包裝素材業體 (III) 各 包裝(製造 및 作業)機械業體 (IV) 各 包裝使用業體 4×15 = 60 業態

包裝四軸 全 包裝의 包裝技術開發 對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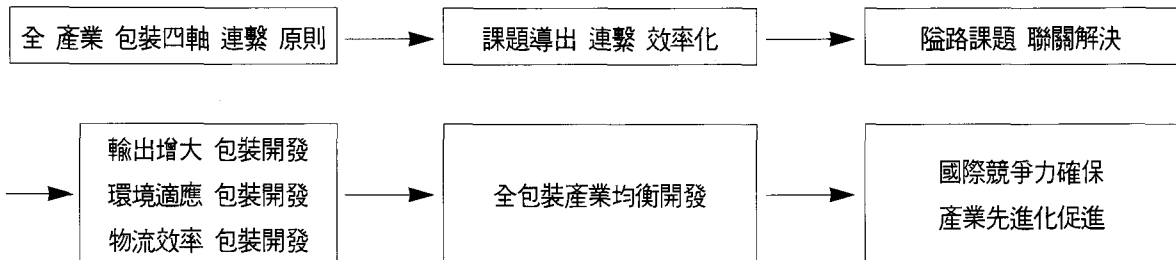
- 〔I〕 紙類包裝系 = 瓦板紙包裝 等 5個 包裝 × 4軸 = 20 業態
 - 〔II〕 金屬包裝系 = 金屬 Can 等 2個 包裝 × 4軸 = 8 業態
 - 〔III〕 유리·陶器包裝系 = 유리包裝 等 2個 × 4軸 = 8 業態
 - 〔IV〕 合成樹脂包裝系 = 剛性包裝 等 3個 包裝 × 4軸 = 12 業態
 - 〔V〕 環境包裝系 = Pulp Mold 1個 包裝 × 4軸 = 4業態
 - 〔VI〕 木材包裝系 = 木箱子等 2個 包裝 × 4軸 = 8業態
- 計 = 60 業態

2. 包裝 四軸原理



3. 包裝四軸 包裝技術 開發連繫圖

包裝材別 包裝四軸 (包裝生產業, 包裝素材業, 包裝機械業, 包裝使用業) 連繫包裝技術開發 連繫圖는 다음과 같음.



Ⅲ. 우리나라 公認 包裝關聯 團體現況과 全 中小包裝產業 綜合 振興研究機關의 存置 必要性

1. 現在 우리나라 包裝關聯團體는 다음과 같은 15個 法人이 있음

〈 가나다順 〉

No	團體名稱	代表者	所在地	設立 根據法	所管包裝
1	韓國哥板紙包裝工業協同組合	柳鍾宇	서울 瑞草區	中小企業協同組合法	哥板紙包裝
2	韓國非鐵金屬工業協同組合聯合會	沈完祚	서울 永登浦區	中小企業協同組合法	金·銀泊包裝
3	韓國유리工業協同組合	尹菊鉉	서울 西大門區	中小企業協同組合法	유리包裝
4	韓國製罐工業協同組合	李喆淳	서울 江南區	中小企業協同組合法	金屬包裝
5	韓國製紙工業協同組合	丁東燮	서울 江南區	中小企業協同組合法	包裝紙
6	韓國종이컵工業協同組合	李聖雄	서울 九老區	中小企業協同組合法	종이컵
7	韓國紙袋工業協同組合	丁雄燮	서울 江南區	中小企業協同組合法	紙袋·소핑백
8	韓國紙函工業協同組合	李大侁	서울 永登浦區	中小企業協同組合法	紙 函
9	韓國폴리프로필렌纖維工業協同組合	金東基	서울 鐘路區	中小企業協同組合法	PP袋
10	韓國包裝開發研究院	李大侁	서울 永登浦區	民法·產業發展法	全包裝 技術研究
11	韓國包裝協會	房大燁	서울 永登浦區	民法	合成樹脂軟包裝
12	韓國프라스틱工業協同組合	李國老	서울 中區	中小企業協同組合法	合成樹脂剛·軟
13	韓國合成樹脂紙工業協同組合聯合會	權重湜	서울 江南區	中小企業協同組合法	플라스틱包裝
14	韓國環境紙類包裝協會	李光文	서울 松波區	民法	環境包裝
15	韓國物流協會	金麗煥	서울 麻浦區	民法	物流·包裝
16	韓國파렛트協會	張文英	서울 麻浦區	民法	파렛트

2. 全體 中小包裝產業 綜合振興研究開發 機關 必要性和 包裝團體의 性格

- ① 위〔I〕과 같이 現在 우리나라가 當面하고 있는 包裝產業振興 計劃 基本指標 및 方針을 達成하고
- ②〔II〕와 같은 包裝四軸原理 (包裝·包裝素材·包裝機械·包裝使用業)에 依한 6大 包裝材工業 60業態의 包裝 新機能, 包裝 新技術의 研究開發에 依한 包裝 一流化로 輸出 增大를 持續할 수 있는 綜合包裝振興研究 開發機關이 必要함.
- ③ 包裝團體의 性格
 包裝團體는 業種別 團體와 全包裝 產業의 共通振興計劃, 包裝技術, 包裝 新機能, 環境包裝對策等 共通事項에 對한 研究開發을 하는 包裝綜合 研究開發機關으로 分類할 수 있으며, 世界各國 또한 이러한 樣相으로 組織化되고 있음. 그럼으로 綜合 包裝振興研究 開發 機關 特히 中小包裝產業 支援 研究開發機關이 되기 爲해서는 다음 5大 必須

條件이 充足되어야만 業界和合과 效率 極大化를 期 할 수 있음

- (i) 全 包裝材別 包裝四軸代表의 共同發議가 있을 것
- (ii) 設立趣旨 및 創立總會 日時를 全 包裝材別 包裝四軸 代表에게 通知하고, 參與가 있을 것
- (iii) 團體의 構成員이 全包裝産業 包裝四軸이 網羅될 것
- (iv) 6大 包裝 또는 物流 等 特定業種事業이나, 偏頗的 任員構成이 아닐 것
- (v) 中小包裝産業 支援政策面에서 中小包裝材 生産者 團體 組合·協會가 積極參與活用하는 組織일 것 등이 要求됨.
그럼으로 어느 特定 專門包裝材 業種만을 所管하는 團體는 6大包裝材 60個業態을 代表하는 管理指導團體가 될 수 없음.

IV. 韓國包裝協會는 韓國의 全包裝産業을 代表할 수 없는 理由와 韓國包裝開發研究院과의 差異點

比較項目	韓國包裝開發研究院	韓國包裝協會
1. 發起趣旨 및 設立 目的	<p>韓國包裝開發研究院은</p> <p>① 産業디자인包裝振興法 改正으로 韓國産業디자인振興院은 包裝振興事業을 할 수 없게 되었음으로 이의 代替機構로 設立한 것임. (別添 沿革資料 參照)</p> <p>② 包裝振興은 1個 包裝材의 包裝課題나 包裝使用者 問題만을 다루어서는 않되므로</p> <p>1) 紙類包裝, 金屬包裝, 유리包裝, 合成樹脂包裝, 木材包裝, 環境包裝 等を 綜合 均衡的인 振興과 包裝의 素材, 機械, 物流, 包裝使用者와의 有機性과 獨自의 高機能, 新技術을 開發하고</p> <p>2) 環境親和包裝材를 開發하여, 輸出을 主軸으로 한 經濟發展이 切實한 韓國의 立場에서 輸出 增大包裝 開發에 注力할것을 目的하여 設立 許可 되었음.</p>	<p>韓國包裝協會는</p> <p>① 1991년 7월 2일 韓國軟包裝協議會 創立總會의 發起趣旨 및 設立目的은 軟包裝産業歷史가 30년이 되었음에도 業界 代辯 團體가 없음으로 軟包裝代表機關을 設立, 衛生的 軟包裝品質 向上과 軟包裝 市場秩序의 安定化 및 環境政策上 社會 問題가 되고 있는 廢合成樹脂 필름의 燒却 處理對策講究를 爲하여 『韓國軟包裝協議會』를 創立하였다는 것은 當時의 會議資料 및 言論報道 內容으로 公知된 事實임.</p> <p>② 그 後 同包裝協會가 他 包裝業界와의 協議나, 아무런 公式通知없이 韓國의 包裝을 代表하는 名稱의 韓國包裝協會를 使用하여 오고 있음 (別添 當時의 言論機關 報道資料 參照)</p>
2. 發起人 包裝分野 別 參與 分布	<p>韓國包裝開發研究院의 發起人은</p> <p>① 紙類包裝, 金屬包裝, 유리包裝, 木材包裝, 環境包裝, 生産者團體 9個 協同組合·協會 代表</p> <p>② 同 包裝 生産業界 代表</p> <p>③ 同 包裝 素材業界 代表</p> <p>④ 同 包裝 機械業界 代表</p> <p>⑤ 同 包裝 學界·學會代表가 總 網羅 27名 參與 하였으며, 全 包裝業界·團體代表에게 公文通知 하였음.</p>	<p>① 1991年 7월 2일 韓國軟包裝協議會 設立 當時의 發起人은</p> <p>1) 기린화학(주) - 필름 軟包裝</p> <p>2) 남경화학(주) - 필름·軟包裝 加工</p> <p>3) (주) 동성산업 - 軟包裝</p> <p>4) 삼진화학(주) - 필름 軟包裝</p> <p>5) (주)선양 - 필름 軟包裝</p> <p>6) 원지산업 - PET 軟包裝</p> <p>7) 유상공업(주) - 필름 軟包裝加工</p> <p>8) 제일화학 - 加工軟包裝 等</p> <p>軟包裝 事業者 8名 및 軟包裝 技術關係人士 1名 計 9名の 發起人만이 發起 參與 하였으며, 全 包裝業界 團體·代表 等に 公文通知 事實 없음 (當時 報道資料 參照)</p>

比較項目	韓國包裝開發研究院	韓國包裝協會
3. 創立總會 包裝分野別參與分布	<p>韓國包裝開發研究院 創立總會에는</p> <p>① 紙類包裝, 金屬包裝, 유리包裝, 木材包裝, 環境包裝 生産者 團體代表</p> <p>② 同 包裝 生産業界 代表</p> <p>③ 同 包裝 素材業界 代表</p> <p>④ 同 包裝 物流 學界·學會代表</p> <p>⑤ 同 包裝 使用業界 代表</p> <p>個人 會員 等 78名, 學生等 計 97名 參與하였으며, 全包裝 業界·團體代表에게 公文通知하고 日刊新聞에 公告하였음.</p>	<p>韓國軟包裝協議會 創立 總會에는</p> <p>① 合成樹脂包裝中 軟包裝 業者만 20 餘名 參席하고, 各 包裝團體, 全 包裝業界 代表者에게 이를 알리거나 公文通知 事實없음.</p> <p>② 그 後 軟包裝業者만 參與하여 만든 軟包裝協議會가 韓國包裝協會라는 名稱으로 變更 되었음 (變更 經緯에 對하여 軟包裝以外 14個 包裝業態에서는 알지못하고 있으며, 알린 事實도 없음)</p>
4. 會員構成 (98. 12. 21 現在 및 産·學·研 Net Work)	<p>韓國包裝開發研究院의 會員構成은</p> <p>1. 中小包裝産業生産者團體 中小企業協同組合·協會 9個 團體會員 加入</p> <p>2. 包裝四軸 包裝·素材·機械·使用業界 企業會員·包裝學界·包裝團體 및 所屬 個人會員 計 111名이 加入, 名實共히 包裝四軸 各界 總網羅, 産·學·研 Net Work가 잘造成되고 있음</p>	<p>韓國包裝協會 會員構成은</p> <p>1. 合成樹脂 軟包裝業者 66社</p> <p>2. 合成樹脂 軟包裝 잉크·製版 生産販賣業者 23名</p> <p>3. 合成樹脂 軟包裝生産機械 業者 7名</p> <p>4. 合成樹脂 軟包裝使用者 6名</p> <p>等 102名 모두가 軟包裝業者 乃至軟包裝 關聯業者가 100%임.</p>
5. 特定包裝業種團體인가, 全包裝綜合團體與否	<p>韓國包裝開發研究院은 包裝 四軸 60個業態 全包裝關聯産業을 對象으로 公平하게 事業을 推進</p>	<p>韓國包裝協會는 設立目的과 運營費가 主로 軟包裝業者로 부터 收金되고 있음으로 軟包裝業界의 發展및 價格政策等을 主 業務로 處理</p>
6. 中小包裝企業 또는 大企業參與活用度	<p>韓國包裝開發研究院의 發起·創立 主Member로 9個 中小包裝産業生産者 團體 中小企業協同組合·協會가 參與加入, 積極活用하고 있음</p>	<p>韓國包裝協會 加入會員은 相當數가 大企業 乃至 準大企業이며, 該當 中小包裝組合·協會 加入은 없음</p>

VII. 韓國包裝協會의 包裝團體 統合計劃(案)에 對한 檢討意見

1. 韓國包裝協會의 包裝團體 統合計劃(案) 1. 統合背景說明에서 『같은 分野를 여러개의 類似團體가 活動함은 高費用 低效率』이라는 主張은 韓國包裝協會는 名稱만 韓國의 全包裝을 代表하는 이름일뿐, 設立趣旨文, 發起人, 創立總會 參加包裝業態, 構成會員 構成任員, 모두가 軟包裝一色の 1個 包裝業態에 不過한데 反하여, 韓國包裝開發研究院은 全包裝業界 業態의 全包裝振興研究開發機關으로 設立한 趣旨, 中小企業包裝團體인 9個의 中小企業協同組合·協會를 爲始해서 13個 包裝業態代表, 包裝學界, 學會 代表 參席下에 構成會員, 構成任員 모두가 包裝 및 包裝産業 四軸代表가 總網羅 分布된 組織으로 固有業務領域이 서로 다름에도 不拘하고, 이를 類似團體로 본 것은 誤判으로서, 軟包裝團體인 韓國包裝協會와 紙類包裝 各 協同組合·協會, 유리包裝協同組合, 金屬包裝協同組合·協會 등의 活動을 類似團體 對象으로 봐 包裝團體統合의 正當성과 合目的性을 慎重檢討해야하며, 無條件 事由分析 없이 高費用 低效率를 내세우는 主張은 獨善의이며, 恣意的인 思考임
2. 韓國包裝協會의 包裝團體統合 計劃(案) 2. 의 下에서 韓國包裝協會는 1991年 12월에 設立하여 事業, 組織 등이

定着되어 會員數가 102個社로, 『國內 全體包裝産業의 發展을 爲한 實績이 있어, 他 機關을 吸收할 能力과 受容態勢가 完備되고 있다는 主張』을 하였는바, 同 業態 構成員을 보면

軟包裝加工業者	51個社
軟包裝인쇄잉크業者	15個社
軟包裝機械業者	7個社
軟包裝銀箔業者	6個社
軟包裝使用食品業者	6個社
軟包裝製版필름業者	8個社
軟包裝成型業者	9個社

計 102個社 로서

이는 모두 軟包裝 乃至 軟包裝 四軸聯關企業體뿐이므로 1個軟包裝에 不過한 韓國包裝協會가 紙類包裝, 金屬包裝, 유리包裝, 木材包裝, 環境包裝等 13個包裝業態가 加入되고 있으며 여기에 特別法으로 組織된 包裝生産者團體 中小企業協同組合·協會 9個 團體가 主軸이되어, 컨소시엄으로 誕生시킨 韓國包裝開發研究院을 韓國包裝協會 1個 事業部署로한 附設 研究所로 吸收 統合하겠다는 主張은 不當 且 語不成說임

3. 韓國包裝協會의 團體統合計劃 (案) 4.의 理事會 人員 調整에 있어, 現 包裝協會 登記簿上의 計 16名의 任員은 그대로 全員 維持하고, 韓國包裝開發研究院의 院長 및 常任理事等 2人만을 理事로 配定한다고 하였는바, 韓國包裝協會 및 韓國包裝開發研究院의 登記簿上 任員의 包裝分野別 分布를 보면

兩團體包裝分野別任員分布

韓國包裝開發研究院		韓國包裝協會	
包裝分野	任員數	包裝分野	任員數
금板紙包裝	3	軟包裝필름加工	11
金屬包裝	2	軟包裝金銀泊	1
유리包裝	1	軟包裝機械	1
紙袋·쇼핑백	1	軟包裝잉크	1
종이컵	1	軟包裝製版	1
木材包裝	1	常任理事	1
緩衝包裝	2		
包裝素材	3		
包裝機械	1		
物流學會	1		
包裝學界	2		
包裝學會	1		
包裝研究界	2		
常任理事	2		
計	23		16

위 표와 같은바, 韓國包裝協會는 統合團體를 軟包裝業者 및 軟包裝인크 販賣業者등 16人으로 構成된 軟包裝 一色の 任員을 그대로 두어, 現在와 같은 軟包裝協會로 運營하면서 全 包裝産業을 吸收 하겠다는 發想은 不當, 不 合理함으로 軟包裝 以外 餘他包裝業界는 이에 參與나 協助를 할수없게 되는 것임.

VI. 包裝團體 統合問題와 關聯한 韓國包裝開發研究院의 見解

[第1案] : 以上 各項을 銳意檢討할 때, 綜合包裝振興 開發機關인 韓國包裝開發研究院과 軟包裝業種團體인 韓國 包裝協會는 設立 目的, 發起人 및 創立에 參與한 包裝分野가 分明히 다르게 設立되었으며, 業務 範圍가 다 른으로, 韓國包裝協會는 그 名稱을 韓國軟包裝協會로 定款 改正하여 純粹軟包裝團體로 現會員, 現任員體 制로 存續시켜 軟包裝工業發展에 注力케하고, 全 包裝業界 總意 特히 9個의 中小企業協同組合·協會가 主 軸이 되어 設立된 韓國包裝開發研究院은 本來의 目的과 政府가 設立認可하고, 政府告示로 包裝技術開發 專擔機關으로 指定한 包裝産業政策대로 一貫性있게 全體 包裝産業의 振興開發研究를 擔當케 함이 合目的 的이라고 思料됨.

[第2案] : 그동안 包裝業界에서 包裝團體 統合論議가 몇차례 있었으나, 韓國包裝開發研究院은 統合의 必要性和 合目的性을 前提로한 論議였으며, 그러므로 包裝團體의 統合理由가 客觀的으로 正當 且 合目的的이고, 그 必要性이 우리나라 包裝産業發展을 爲하여 寄與될 것이 明白한 境遇, 이때의 包裝團體 統合方案은 다음의 節次로 實施함이 妥當함.

- ① 統合對象 團體를 檢討 確定 (統合對象 團體長이 다음 各項에 대하여 該當團體 總會의 委任 決議받아 推進)
- ② 統合對象 團體 總會의 合併 및 解散決議
- ③ 새로 組織할 團體의 發起推進委員會 構成 (6大 包裝材 15個 業種에서 1業種當 發起人 1-2人 <最多 2人> 으 로 하여 總 25人으로 함)
- ④ 統合對象團體의 殘餘 財産은 各 統合對象團體의 定款 規定에 따라 全額을, 새로 組織되는 新 統合團體에 寄 贈할 것을 決議함.
- ⑤ 新 統合團體의 定款, 機構圖表, 財源出捐등 基本事項은 新統合發起人會에서 試案을 作成, 創立總會에서 確 定決議
- ⑥ 新統合團體 發起人大會 開催
- ⑦ 新統合團體 創立總會 開催
(新統合團體 任員 中 非常勤理事·監事는 6大 包裝材 15個 業種에서 1人式을 原則으로하여, 20人 以內로 함)
- ⑧ 新統合 團體의 登記와 2個 團體의 解散·清算登記를 完了함. < 以上 >

지구환경정화 CAMPAIGN

샛강이 살아야 큰 강이 삽니다.

Save Our Streams